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10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 3. 발행어음 4. 환매조건부채권(RP) 5. 이율보증형보험(GIC) 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7조 <좌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8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동>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u>시중은행</u>) <u>3. 정기에·적금(저축은행)</u> <u>4. 발행어음</u> <u>5. 환매조건부채권(RP)</u> <u>6. 이율보증형보험(GIC)</u>	개정일 명시 정기예금 상품 분류 세분화 및 번호 순서 변경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7. 집합투자증권(채권형) 8.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9.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0.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1.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2.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3. 제7호 내지 제10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4.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생략>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생략>	<u>7.</u>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u>8.</u> 집합투자증권(채권형) <u>9.</u>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u>10.</u>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u>11.</u> 집합투자증권(주식형) <u>12.</u>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u>13.</u>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u>14.</u> 제<u>8</u>호 내지 제<u>11</u>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u>15.</u>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좌동>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좌동>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1조 <생략>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33조~제3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12월 20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4조 <생략>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1조 <좌동>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3조~제35조 <좌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8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4조 <좌동>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4. 발행어음 5. 환매조건부채권(RP) 6. 이율보증형보험(GIC) 7.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0.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2.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3.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5.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6.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7.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시중은행) 3. 정기에·적금(저축은행) 4.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5. 발행어음 6. 환매조건부채권(RP)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형) 10.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2.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3.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7.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8.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기에금 상품 분류 세분화 및 번호 순서 변경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② <생략>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② <좌동>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33조 <생략>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35조~제36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33조 <좌동>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5조~제36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8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27조 <생략>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29조~제31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3조 <생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27조 <좌동>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29조~제31조 <좌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8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3조 <좌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4. 발행어음 5. 환매조건부채권(RP) 6. 이율보증형보험(GIC) 7.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0.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2.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3.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5.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6.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7.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시중은행) 3. 정기에·적금(저축은행) 4.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5. 발행어음 6. 환매조건부채권(RP)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형) 10.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2.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3.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7.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8.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기에금 상품 분류 세분화 및 번호 순서 변경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② <생략> 제5조 <생략>	② <좌동> 제5조 <좌동>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29조 <생략>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31조~제3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29조 <좌동>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1조~제32조 <좌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8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1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10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4. 발행어음 5. 환매조건부채권(RP) 6. 이율보증형보험(GIC) 7.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1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8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u>시중은행</u>) 3. 정기에·적금(<u>저축은행</u>) 4.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5. 발행어음 6. 환매조건부채권(RP) 7. 이율보증형보험(GIC)	개정일 명시 정기예금 상품 분류 세분화 및 번호 순서 변경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0.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2.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3.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일임재산 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7.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8. 제14호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복수로 운용중인 경우 이들간의 매도순서는 사전에 지정된 투자일임 매도순서에 따르며,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매도통지에 따라 일임재산으로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합니다. 19.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생략> <u><신설></u> 제5조 <생략>	<u>8.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u> <u>9. 집합투자증권(채권형)</u> <u>10.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u> <u>11.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u> <u>12. 집합투자증권(주식형)</u> <u>13.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u>14.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u>15.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일임재산</u> <u>16.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u> <u>17.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u> <u>18.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u> <u>19. 제15호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복수로 운용중인 경우 이들간의 매도순서는 사전에 지정된 투자일임 매도순서에 따르며,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매도통지에 따라 일임재산으로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합니다.</u> <u>20.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u> ② <좌동> <u>③ 보증형실적배당보험 상품의 경우 ④항의 매각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품의 거치기간 종료 후 적립금자산 매각을 별도로 수행합니다.</u> 제5조 <좌동>	상품 특성에 따른 보충 문언 추가